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6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최은석 · 안철수 · 이종배
진종오 · 구자근 · 신성범
김상훈 · 한지아 · 김장겸
김은혜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⑧ (생략)	<u>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u> ② ~ ⑧ (현행과 같음)
------------	--